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75
------	------

2024.04.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4.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남부, 북부) 통합 운영에 따라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중단(2026. 3. 1.부터)에 따라 운영기간을 명시함.

나. 주요내용

-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안 제5조, 별표)
- 문구 등 정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4개 기술교육원이 통합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명칭에 이를 반영하고, 2026년 2월 28일 자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이 중단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과 통합운영의 필요성

- 서울시는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취업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4개소의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황 >

구 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위 치	용산구 한남동	경기도 군포시	강동구 고덕동	노원구 상계동
최 초 명 칭	서울특별시립 소녀관	엘림직업훈련원	서울특별시립 삼성원	서울특별시립 상계직업훈련원
설 립 년 도	1957	1988*	1953	1990
근 무 인 원	38명	25명	45명	42명
위 탁 법 인	한국생산성본부(통합운영)		경북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위 탁 기 간	'22.3.1~'25.2.28		'22.3.1~'25.2.28	'22.3.1~'25.2.28

구 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24년 예산	4,670백만원	3,240백만원	5,980백만원	5,236백만원
학과/인원	40/1,748	19/974	45/1,720	50/1,758
서울시과정	25/1,248	12/550	26/1,215	29/1,251
국가합격과정	15/500	7/424	19/505	21/507

* 1991년부터 엘림복지회가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여 28년간(1991.8.~2019.4.) 수탁운영함.

- 당초 서울시 직업훈련시설은 시설별로 명칭과 수탁기관을 달리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 명칭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으로 단일화되었음.
- 그 후 2022년부터 서울시는 중부와 남부 기술교육원의 수탁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¹⁾와 기술교육원별 학과 중복, 교수 역량 미흡,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학생 모집률 및 취업률 감소, 과도한 행정인력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면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²⁾.
- 한편 서울시는 중부 및 남부 기술교육원의 통합위탁을 추진하면서 통합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후 4개 기술교육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는바, 이를 위해 추진된 용역³⁾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1) 원장의 성비위, 회계처리 미숙, 계약체결 지침 미이행, 불투명한 교육생 선발시스템 운영(이상 중부 기술교육원), 장기수탁에 따른 시설 사유화 및 방만 운영(이상 남부기술교육원)

2) ‘기술교육원 위탁운영 개선 컨설팅’(2020.5.~7.)에 따라 남부와 중부기술교육원을 통합운영함.

3)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성과평가 용역’(2023.12.~2024.4.), (사)공공기관경영연구원.

<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평가지표별 결과 >

평가 분야	평가지표	주요내용
교육 운영	교육과정 편제 합리성 (통폐합사례)	• 중부와 남부의 주얼리, 헤어디자인 관련 중복학과의 경우 남부의 정원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23년 중부 캠퍼스로 정원을 통합함에 따라 정원 충족률 100% 달성
	교원 운영 개선 실적 (교수 및 강사 현황)	• 두 캠퍼스 모두 시간강사 인력 활용 증가 (중부 '21년 65명 '23년 99명, 남부 '21년 27명, '23년 36명)
교육 운영 (결과)	교육과정 경쟁력	• 중부의 경우 '19년대비 '22년 취업률과 정원충족률 평균 및 평균을 상회하는 위치에 더 많은 학과 군집 • 남부의 경우 평균상회 지점에 군집형성의 조짐
	교육과정 신규성	• 중부의 경우 최근 NCS개발 직무에 적합한 학과 신설 • 남부의 경우 신규성보다는 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과의 신설
운영 혁신 (활동/제도)	조직편제의 변화 및 조직 생산성	• 중·남부 모두 인당 생산성의 효과가 미약 (공공조직의 특성으로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고용승계 이루어진 이유)
	직급체계의 변화	• 통합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체계 통합
	보수체계 변화	• 통합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수체계 통합
	업무역량 강화	• 대부분의 Best Practice 관행이 중부에서 남부로 이전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남부에 적용
운영 혁신 (결과) *조직 문화	조직문화 일반	• 통합 후 중부의 기 표준화 된 규정이 남부에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캠퍼스의 조직몰입도
	통합활동 인식	• 기관생산성, 고유미션달성, 개인역량고취 측면 모두 남부캠퍼스의 구성원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 • 두 캠퍼스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多

- 또한 동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로 ▶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유사 교육훈련프로그램 대비 차별적 우위성 확보, ▶ 기능훈련과 기술교육의 수준 차이, 지역기반 구인 수요와 구직요구,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교육 훈련기관으로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음.
- 한편 서울시는 군포시에 위치하여 교육생 모집이 어렵고 시설활용도가 낮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로의 이전이 요구된 남부기술교육원은

이전 검토부지 3개소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비율)이 매우 낮게 조사됨⁴⁾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른 3개 기술교육원에 분산하고 남부 기술교육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 남부기술교육원 이전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 >

- (원안) 남부기술교육원 동일 학과(13개, 550명), 운영인력(25명) 이전 시
 - 현재 규모(인력, 학과수) 유지·이전시 필요면적 : **전용 4,285㎡ 이상**
 - (대안) 교육과정 수요조사 반영 후 이전 시(교육생 정원, 운영인력, 필요면적은 동일)
 - 희망직종 순 : 경영행정사무직(47%), 정보통신(39%), 사회복지(36%), 예술디자인 방송(31%), 미용예식서비스(23%) 등 직종별 분류
- ※ 교육과정 개편 시 취업을 증대에 따른 편익증가 효과로 B/C값 개선 효과 있음

구분		B/C Ratio
원안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0.36
	온수동 럭비구장	0.37
	독산동 임대산업시설	0.24
대안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0.41
	온수동 럭비구장	0.42
	독산동 임대산업시설	0.27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4개 기술교육원의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해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된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 일자를 명시한 것임.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술교육원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경직적인 인사·조직 운영체계를 해소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4)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2023.4.~2023.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측면이 있음.

- 다만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시설 등을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만, 동 개정조례안은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위해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동 조례 별표에 폐지 일자를 명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남부기술교육원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시점은 2026년 2월 28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2년 동안 서울시나 시의회의 정책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술교육원 노조는 고용안정과 기술교육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를 요구하고 있고,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반대하는 151건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서울시는 민원 해소를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5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남부, 북부) 통합 운영에 따라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중단(2026. 3. 1.부터)에 따라 운영기간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
(안 제5조, 별표)

나. 문구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제5조 제2항과 관련, 우선 입학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있어 미반영함
(가점 대상 : 외국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및 중장년 전직 특화교육과정 50+캠퍼스 수료자)

※ 제11조 제1항과 관련,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고려에 대한 제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려하고 있으므로 미반영함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관리가 가능한 사업)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조근희(☎2133-546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중 시장은”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을 “기술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 및 별표 개정 규정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2026. 2. 28.까지만 운영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학자격 등) ① (생 략)</p> <p>② <u>제1항</u>의 자격을 갖춘 사람 <u>중</u> <u>시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 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교육훈 련생. 단, 이 경우에 위탁교육 은 서울특별시 <u>중부·남부기 술교육원</u> 남부캠퍼스에서 시 행한다.</p> <p>4. (생 략)</p> <p>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생 략)</p> <p>② <u>제6조제1항</u>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u>시행규칙</u>으로 정한다.</p> <p>③ (생 략)</p> <p>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p>	<p>제5조(입학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u>----- <u>중에서</u>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다만</u>----- ----- <u>기술교육원</u>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u>----- ----- <u>규칙</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
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
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
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업교육훈련관련 학계, 전문
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훈련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 4. (생략)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
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범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사람 중

1.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한 차례만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동부기술 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 덕로 18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 원 동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 덕로 183
서울특별시 중부·남 부기술교육원 중부캠 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 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 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 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중부·남 부기술교육원 남부캠 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기술교육 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북부기술 교육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 릉로길 70가 8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 원 북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 릉로70가길 81
<p>※ <u>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u>는 2026. 2. 28.까지만 운영한다.</p>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 지역 기술교육원으로 분산 이전하는 사항으로, 자원 이전 및 운영시스템 통합 등이 수반되어야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남부기술교육원의 분산 이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건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조근희(☎02-2133-5463)